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10. 12(금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임태진 • ☎ (044) 201-3351, 334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..”1주택자 불만 ‘폭발’ 보도 관련

- 금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할겠다는 취지로,
- 1주택자는 신규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반 ~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,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 · 한국경제 등, 10.12) >

- ◆ 1주택자 ‘갈아타기’ 수요 무시, 6개월내 팔려면 손실 불가피
- ◆ “6개월내 집 안 판다고 징역”

  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